



FMD, 힘을 모으고 힘을 내서 막아내자



대한한돈협회

우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, 제2축산회관 3층 / ☎(02)581-9751/ Fax581-9768 농가지원부

문서번호 한돈협지 제352-1호

시행일자 2021. 1 22.

수신 본회 임원 및 도협의회, 지부(회)

참조

선결			지시	
접수	일자		결재·공람	
	시간			
	번호			
	처리과			
	담당자			

제목 양돈장 방역 시설·장비 등 설치지원사업 실시 알림

1. 평소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2.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가유입 차단의 일환으로 방역실, 전실 등의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3. 이에 본회에서는 2021년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지침 주요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각 도협의회 및 지부(회)에서는 지역농가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: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요약자료 1부 “끝”

사 단 법 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



[농식품부]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요약

- 2021. 1. 20. 대한한돈협회 -

(사업명)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

(사업내용)

- ① 방역시설·장비 지원(전실, 차량 세척·소독 시설·장비, 대인 소독 시설·장비, 축사 내·외부 소독장비, 방역실, 야생조수류 차단(그물망 등) 시설·장비, 야생조류 퇴치기, 소석회 살포기)

(방역실) 동절기 및 우천시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설치 가능(소독실, 샤워실, 탈의실 등 추가 가능)

(전실) 양돈농가는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관련 별표 1의2에 따른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

(그물망) 새 그물망은 격자 크기는 야생조수류, 설치류 등이 침입하지 않은 크기인 $2 \times 2\text{cm}^2$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설치

- ②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방역시설

내부울타리, 돼지 입출하대, 축산폐기물 보관시설, 물품반입시설은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관련 별표1의2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

(사업규모) 국비 30%, 지방비 30%, 용자 30%, 자부담 10%(국비 68억, 지방비 68억, 용자 68억, 자부담 22억)

○ (상한액) 표준사업비(5천만원) 범위 내 실제 소요된 실비 지원

* 용자 30%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(금리: 연리 2%,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)

(대상자)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

○ (우선순위)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포함 돼지 사육 농가, 5년 이내 야생멧돼지 ASF나 CSF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역(시·군) 돼지 사육 농가 등

(추진일정) 사업계획 신청서 시·군 제출('21.2월~)

* 신청·접수 기간은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후 신청 바람

※ 붙임 :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지침(본회 홈페이지 게시)

<사업계획서>

가. 세부 사업계획

설치장소 (①)	방역 인프라 장비(②)	수량	단가 (천원)	합계 (천원)	비고
농장들레	울타리				
합 계					

① 설치장소
 1: 농장입구, 2: 모돈사, 3: 비육사, 4: 자돈사, 5: 기타:
 ② 방역 인프라 장비
 1. 방역시설 및 장비(전실, 차량 세척·소독 시설·장비, 대인 소독 시설·장비, 방역실, 축사 내·외부 소독장비, 야생조수류 차단(그물망 등) 시설·장비, 야생조류 퇴치기, 소석회 살포기, 내부 울타리, 입·출하대, 축산폐기물 보관시설, 물품반입시설 등)

< 소요자금 현황 >

사업량	사 업 비 (천원)					계 (A+C)
	총계	국고(A)	지방비(B)	융자(C)	자담(D)	
개						

※ 소요액 산출근거(계약서, 견적서, 원가계산서 등)는 상세히 첨부

◆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◆

< 필수 첨부자료 >

1. 사업계획서
2. 축산업허가증
3. 신용조사서 (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)(용자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)
4.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(CCTV 설치시 축사 연면적이 1,000㎡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)
5.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